

[別表의1] <改正 1963·6·8>

住居地域內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

- (1) 別表의2와 別表의4에 해당하는 建物
- (2) 常時 使用하는 原動機의 馬力數의 合計가 3馬力을 超過하는 工場
- (3)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
 - 1. 容量 10릿터以上 30릿터未滿의 아세찌렌가스 發生器를 使用하는 金屬工業
 - 2. 馬力數의 合計가 0.25馬力未滿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塗料의뿔질
 - 3. 原動機를 使用하는 2台以下の 研磨機에 依한 金屬의 乾燥研磨(工具만을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)
 - 4. 콜크, 에브나이트 또는 合成樹脂의 粉碎 또는 乾燥研磨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
 - 5. 製材, 裁縫機, 織捻糸, 組紐, 編物, 製袋 또는 줄갈날세우기로서 馬力數의 合計가 1馬力以上の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
 - 6. 印刷, 製針 또는 石材를 쪼개는 일로서 馬力數의 合計가 2馬力以上の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
- (4) 바닥面積의 合計가 50平方米以上の 自動車車庫
- (5) 劇場, 映畫館, 演藝場 또는 觀覽場
- (6) 카바레, 舞蹈場 其地 이와 類似한 用에 共하는 建築物
- (7) 倉庫業을 經營하는 倉庫